

# 과충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요약본)

## ① 단계 체계 및 전환기준

구분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지표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 등)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등)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충족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② 단계별 방역지침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시설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출입자 온도체크 마스크착용 의무화	"	"	"	"
방역소독	현관 손잡이, 승강기 등 매일 소독 1회/2개월	1회/2개월	1회/1개월	2회/1개월	2회/1개월
※ 회관내 확진자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특별방역 즉시 실시					
회의실 사용제한	2m이상 거리두기	국제회의장(550석) 통합 사용 중지 4㎡ 당 1명 제한 100명이상 제한	8㎡ 당 1명 제한 100명이상 제한	16㎡ 당 1명 제한 50명이상 제한	회의실 사용중지
사무처 근무		사차출퇴근제 권고 사차점심근제 권고	사차출퇴근제 강제 사차점심근제 강제	재택근무 1/3 (출근자 2/3유지) 외부회의 참석제한	재택근무 2/3 (출근자 1/3유지) 외부회의 참석금지
			문화의날 중지 전체모임 중지	소모임 중지	모든 모임 중지
입주기관 권고			사차출퇴근제 권고 사차점심근제 권고	재택근무 1/3권고	재택근무 2/3권고
마스크착용 의무	현관 승강기 복도, 계단 회상실 회의실	"	모든 실내	"	"
※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서 미착용 위반시 개인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과태료 부과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회의실 인원 기준

구분	면적 (㎡)	수용 (명)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2m 유지시	임대 여부	1명/4㎡	임대 여부	1명/8㎡	임대 여부	1명/16㎡	임대 여부	1명/16㎡	임대 여부
국제회의장	950	550	270명	○	152명	×	76명	×	38명	×	38명	×
대회의실	610	300	150명	○	99명	○	76명	○	38명	○	38명	×
중회의실	170	120	60명	○	42명	○	21명	○	10명	○	10명	×
소회의실2	140	84	42명	○	35명	○	17명	○	8명	×	8명	×
소회의실1,3	100	56	28명	○	25명	○	12명	○	6명	×	6명	×
방송지원실	100	10	10명	○	10명	○	10명	○	6명	○	6명	○

---

# 과충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

2020. 11.

# I.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2020.11.1.)하고 시행(2020.11.7.)

## 1. 개편방향

- ①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3단계 → 5단계), 단계 격상기준 일부 상향
- ② 사회·경제적 활동 최대 보장, 필수/비필수 부문 구별 및 집합금지 조치 강화
- ③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확대
- ④ 의견수렴 절차 강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2. 단계 체계 및 전환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3. 단계별 주요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시설	기본방역조치 의무화	중점·일반시설 4㎡당 1명 제한	일반시설 8㎡당 1명 제한	일반시설 16㎡당 1명 제한	필수시설외 집합 금지
모임·행사	500명이상 지자체 신고	100명이상 집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금지		50명이상 금지	10명 이상 금지
마스크착용 의무화	중점·일반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 실내경기장,	실외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실내 전체 2m유지 곤란 실외	
직장근무	재택근무 1/5 권고	재택근무 1/3 권고		재택근무 1/3 이상 권고	필수인력이외 재택근무 의무화
등교	밀집도 2/3원칙	밀집도 2/3준수	밀집도 1/3원칙	밀집도 1/3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좌석 한칸 띄기	좌석수 30%내	좌석수 20%내	비대면(20명 이내)	1인영상만 허용

## II. 과총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개편(안)

### 1 방역관리자 및 역할

구분	총괄담당자	방역관리팀	방역협조팀
담당자(팀)	기획관리본부장	회원지원팀	경영지원팀
역할 및 업무	총괄관리	방역지침 수립·시행 회관내 방역관리·통제 보건소 협의 지원	직원 인력관리·통제 직원 검사·진료 조치

### 2 단계별 방역지침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시설관리	전자출입명부 사용 출입자 온도체크 마스크착용 의무화	"	"	"	"
방역소독	현관 손잡이, 승강기 등 매일 소독	"	"	"	"
	1회/2개월	1회/2개월	1회/1개월	2회/1개월	2회/1개월
※ 회관내 확진자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특별방역 즉시 실시					
회의실 사용제한		국제회의장(550석) 통합 사용 중지	"	"	"
	2m이상 거리두기	4㎡ 당 1명 제한	8㎡ 당 1명 제한	16㎡ 당 1명 제한	"
사무처 근무		100명이상 제한	100명이상 제한	50명이상 제한	회의실 사용중지
		시차출퇴근제 권고	시차출퇴근제 강제	"	"
		시차점심시간제 권고	시차점심시간제 강제	"	"
				재택근무 1/3 (출근자 2/3유지)	재택근무 2/3 (출근자 1/3유지)
입주기관 권고			문화의날 중지	외부회의 참석제한	외부회의 참석금지
			전체모임 중지	"	"
			소모임 중지	모든 모임 중지	
마스크착용 의무	현관 승강기 복도 계단 화장실 회의실	"	모든 실내	"	"
	※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서 미착용 위반시 개인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과태료 부과				

### ※ 단계별 국제회의장 임대구분

구분	면적 (㎡)	수용 (명)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2m 유지시	임대 여부	1명/4㎡	임대 여부	1명/8㎡	임대 여부	1명/16㎡	임대 여부	1명/16㎡	임대 여부
국제회의장	950	550	270명	○	152명	×	76명	×	38명	×	38명	×
대회의실	610	300	150명	○	99명	○	76명	○	38명	○	38명	×
중회의실	170	120	60명	○	42명	○	21명	○	10명	○	10명	×
소회의실2	140	84	42명	○	35명	○	17명	○	8명	×	8명	×
소회의실1,3	100	56	28명	○	25명	○	12명	○	6명	×	6명	×
방송지원실	100	10	10명	○	10명	○	10명	○	6명	○	6명	○

### ③ 단계별 방역 세부내용

#### 1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 1. 시설관리

###### ① 전자출입명부 사용(2개소, 현관 및 차량 출입구)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예외없이 출입시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식) 사용
-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생성이 어려운 고령자 및 비 사용자의 경우 수기출입명부 작성(QR코드 인식장소에 별도 비치)
- 차량 이용자는 차량인식으로 대체(단, 차량 동승자는 QR코드 인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사용은 정부의 사용 해지시까지 지속

###### ② 출입자 온도체크(37.5 C 이상 출입금지)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의 발열 체크
- 현관 출입자는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1차 검사, 발열 의심자는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2차 검사후 출입
- 차량 이용자는 주차장 출입시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검사후 출입

###### ③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후 출입
-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금지

##### 2. 방역소독

###### ① 매일 소독

- 출입구 손잡이, 승강기, 회의실 탁자, 의자 등 자주 접촉하는 시설, 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실시

###### ② 소독제 비치

- 손 소독제 주요 장소 비치(현관, 주차장, 승강기 앞, 회의실 앞 등)
-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 및 화장실 안내 표시

###### ② 정기 소독

- 2개월에 1회 이상 회관 전체 소독 실시

※ 회관내 확진자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특별방역소독 실시

### 3. 회의실 사용 제한

#### ① 회의실 임대 사용시 필수 수칙 준수

- 회의실 출입전 출입자 체온 검사(비접촉식 체온계 구비 필요)
- 회의실 출입전 충분한 손소독제 구비 및 사용(손소독제 구비 필요)
- 회의실 출입전 마스크 반드시 착용(미착용자 입실 금지)
- 회의실내 거리두기 이행(2m 이상 거리두기)
- 참석자 명단 작성 및 보관(1개월 이상)

#### ② 충분한 거리 유지

- 참석자간 거리두고 앉기
- 회의실 내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등) 자제하기
- 회의실 이용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두고 여유있게 진행

### 4. 마스크 착용 생활화

#### ① 회관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현관, 승강기내, 화장실내, 복도, 계단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②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과총 사무처 회의실, 입주기관 자체 회의실, 국제회의장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2

###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 1. 시설관리

##### ① 전자출입명부 사용(2개소, 현관 및 차량 출입구)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예외없이 출입시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식) 사용
-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생성이 어려운 고령자 및 비 사용자의 경우 수기출입명부 작성(QR코드 인식장소에 별도 비치)
- 차량 이용자는 차량인식으로 대체(단, 차량 동승자는 QR코드 인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사용은 정부의 사용 해지시까지 지속

##### ② 출입자 온도체크(37.5 C 이상 출입금지)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

자)의 발열 체크

- 현관 출입자는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1차 검사, 발열 의심자는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2차 검사후 출입
- 차량 이용자는 주차장 출입시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검사후 출입

### ③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후 출입
-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금지

## 2. 방역소독

### ① 매일 소독

- 출입구 손잡이, 승강기, 회의실 탁자, 의자 등 자주 접촉하는 시설, 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실시

### ② 소독제 비치

- 손 소독제 주요 장소 비치(현관, 주차장, 승강기 앞, 회의실 앞 등)
-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 및 화장실 안내 표시

### ② 정기 소독

- 2개월에 1회 이상 회관 전체 소독 실시

※ 회관내 확진자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특별방역소독 실시

## 3. 회의실 사용 제한

### ① 회의실 임대 사용시 필수 수칙 준수

- 회의실 출입전 출입자 체온 검사(비접촉식 체온계 구비 필요)
- 회의실 출입전 충분한 손소독제 구비 및 사용(손소독제 구비 필요)
- 회의실 출입전 마스크 반드시 착용(미착용자 입실 금지)
- 회의실내 거리두기 이행(4m<sup>2</sup> 당 1인 제한)
- 참석자 명단 작성 및 보관(1개월 이상)

### ② 충분한 거리 유지

- 참석자간 가급적 2m 이상 거리두기
- 회의실 내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등) 자제하기
- 회의실 이용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두고 여유있게 진행

### ③ 국제회의장(550석) 통합 사용 중지

- 국제회의장은 통합(550석) 사용을 중지하고 대회의실(300석), 중회의실1(120석), 중회의실2(120석)로 개별 분리하여 사용

④ 대회의실(300석) 이용 제한

- 대회의실 수용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
  - ※ 대회의실은 회의실내 거리두기(4m<sup>2</sup>당 1명) 이행시 150명까지 수용 가능하나 100명 미만의 행사만 이용 가능 조치(100명 이상 행사는 임대 불가)

⑤ 중회의실, 소회의실 이용인원 제한

- 중회의실1,2 : 42명 미만(4m<sup>2</sup>당 1명 이행시 42명까지 가능)
- 소회의실2 : 35명 미만(4m<sup>2</sup>당 1명 이행시 35명까지 가능)
- 소회의실1,3 : 25명 미만(4m<sup>2</sup>당 1명 이행시 25명까지 가능)

#### 4. 사무처 근무

① 시차출퇴근제 권고

- 시차출퇴근제(팀원, 팀장 대상)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② 시차점심시간제 권고

- 시차점심시간제(팀원, 팀장 대상)를 사용하여 많은 수의 직원이 동일시간에 출입구, 승강기, 계단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

#### 5. 마스크 착용 생활화

① 회관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현관, 승강기내, 화장실내, 복도, 계단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②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과총 사무처 회의실, 입주기관 자체 회의실, 국제회의장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3**

**2단계 [지역적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1. 시설관리

① 전자출입명부 사용(2개소, 현관 및 차량 출입구)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예외없이 출입시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식) 사용
-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생성이 어려운 고령자 및 비 사용자의 경우 수기출

입명부 작성(QR코드 인식장소에 별도 비치)

- 차량 이용자는 차량인식으로 대체(단, 차량 동승자는 QR코드 인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사용은 정부의 사용 해지시까지 지속

## ② 출입자 온도체크(37.5 C 이상 출입금지)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의 발열 체크
- 현관 출입자는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1차 검사, 발열 의심자는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2차 검사후 출입
- 차량 이용자는 주차장 출입시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검사후 출입

## ③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후 출입
-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금지

## 2. 방역소독

### ① 매일 소독

- 출입구 손잡이, 승강기, 회의실 탁자, 의자 등 자주 접촉하는 시설, 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실시

### ② 소독제 비치

- 손 소독제 주요 장소 비치(현관, 주차장, 승강기 앞, 회의실 앞 등)
-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 및 화장실 안내 표시

### ② 정기 소독

- 1개월에 1회 이상 회관 전체 소독 실시

※ 회관내 확진자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특별방역소독 실시

## 3. 회의실 사용 제한

### ① 회의실 임대 사용시 필수 수칙 준수

- 회의실 출입전 출입자 체온 검사(비접촉식 체온계 구비 필요)
- 회의실 출입전 충분한 손소독제 구비 및 사용(손소독제 구비 필요)
- 회의실 출입전 마스크 반드시 착용(미착용자 입실 금지)
- 회의실내 거리두기 이행(8m<sup>2</sup> 당 1인 제한)
- 참석자 명단 작성 및 보관(1개월 이상)

## ② 충분한 거리 유지

- 참석자간 가급적 2m 이상 거리두기
- 회의실 내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등) 자제하기
- 회의실 이용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두고 여유있게 진행

## ③ 국제회의장(550석) 통합 사용 중지

- 국제회의장은 통합(550석) 사용을 중지하고 대회의실(300석), 중회의실1(120석), 중회의실2(120석)로 개별 분리하여 사용

## ④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이용 제한

- 대회의실 : 76명 미만(8m<sup>2</sup>당 1명 이행시 76명까지 가능)
- 중회의실1,2 : 21명 미만(8m<sup>2</sup>당 1명 이행시 21명까지 가능)
- 소회의실2 : 17명 미만(8m<sup>2</sup>당 1명 이행시 17명까지 가능)
- 소회의실1,3 : 12명 미만(8m<sup>2</sup>당 1명 이행시 12명까지 가능)

## 4. 사무처 근무

### ① 시차출퇴근제 강제

- 시차출퇴근제(팀원, 팀장 대상) 실시 강화(부서별 적정인원 배분)

### ② 시차점심시간제 강제

- 시차점심시간제(팀원, 팀장 대상) 실시 강화(부서별 적정인원 배분)

### ③ 문화의날 행사 시행 중지

- 매월 시행되는 문화의 날 행사 중단

### ④ 전체 회식 등 모임 중지

- 사무처 직원 전체 모임 등 중지(필수 소모임 가능하나 자제 권고)

## 5. 입주기관 권고

### ① 시차출퇴근제 권고

- 시차출퇴근제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

### ② 시차점심시간제 권고

- 시차점심시간제를 사용하여 많은 수의 직원이 동일시간에 출입구, 승강기, 계단을 이용하지 않도록 요청

## 6.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① 회관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현관, 승강기내, 화장실내, 복도, 계단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②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과총 사무처 회의실, 입주기관 자체 회의실, 국제회의장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③ 사무실내 근무시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4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1. 시설관리

① 전자출입명부 사용(2개소, 현관 및 차량 출입구)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예외없이 출입시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식) 사용
-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생성이 어려운 고령자 및 비 사용자의 경우 수기출입명부 작성(QR코드 인식장소에 별도 비치)
- 차량 이용자는 차량인식으로 대체(단, 차량 동승자는 QR코드 인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사용은 정부의 사용 해지시까지 지속

② 출입자 온도체크(37.5 C 이상 출입금지)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의 발열 체크
- 현관 출입자는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1차 검사, 발열 의심자는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2차 검사후 출입
- 차량 이용자는 주차장 출입시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검사후 출입

③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후 출입
-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금지

2. 방역소독

① 매일 소독

- 출입구 손잡이, 승강기, 회의실 탁자, 의자 등 자주 접촉하는 시설, 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실시

② 소독제 비치

- 손 소독제 주요 장소 비치(현관, 주차장, 승강기 앞, 회의실 앞 등)
-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 및 화장실 안내 표시

② 정기 소독

- 1개월에 2회 이상 회관 전체 소독 실시

※ 회관내 확진자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특별방역소독 실시

### 3. 회의실 사용 제한

① 회의실 임대 사용시 필수 수칙 준수

- 회의실 출입전 출입자 체온 검사(비접촉식 체온계 구비 필요)
- 회의실 출입전 충분한 손소독제 구비 및 사용(손소독제 구비 필요)
- 회의실 출입전 마스크 반드시 착용(미착용자 입실 금지)
- 회의실내 거리두기 이행(16m<sup>2</sup> 당 1인 제한)
- 참석자 명단 작성 및 보관(1개월 이상)

② 충분한 거리 유지

- 참석자간 가급적 2m 이상 거리두기
- 회의실 내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등) 자제하기
- 회의실 이용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두고 여유있게 진행

③ 국제회의장(550석) 통합 사용 중지

- 국제회의장은 통합(550석) 사용을 중지하고 대회의실(300석), 중회의실1(120석), 중회의실2(120석)로 개별 분리하여 사용
- 개별 분리 사용시에도 회의실내 거리두기 이행(4m<sup>2</sup> 당 1인 제한)

④ 50명 이상 행사 제한

- 모든 회의실 이용시 50명 미만 행사만 가능(50명 이상 행사 임대 불가)

⑤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이용 제한

- 대회의실 : 38명 미만(16m<sup>2</sup>당 1명 이행시 38명까지 가능)
- 중회의실1,2 : 10명 미만(16m<sup>2</sup>당 1명 이행시 10명까지 가능)
- 소회의실2 : 이용중지
- 소회의실1,3 : 이용중지

### 4. 사무처 근무

- ① 시차출퇴근제 강제
  - 시차출퇴근제(팀원, 팀장 대상) 실시 강화(부서별 적정인원 배분)
- ② 시차점심시간제 강제
  - 시차점심시간제(팀원, 팀장 대상) 실시 강화(부서별 적정인원 배분)
- ③ 문화의날 행사 시행 중지
  - 매월 시행되는 문화의 날 행사 중단
- ④ 전체 회식 등 모임 중지
  - 사무처 직원 전체 모임 중지
  - 소모임 중지
- ⑤ 재택근무제 시행
  - 재택근무제 순차적 시행(출근자 2/3 이상 유지)
- ⑥ 외부회의 참석 제한
  - 국내외 출장 및 외부 회의 참석 제한(필수업무만 출장 시행)

## 5. 입주기관 권고

- ① 시차출퇴근제 권고
  - 시차출퇴근제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
- ② 시차점심시간제 권고
  - 시차점심시간제를 사용하여 많은 수의 직원이 동일시간에 출입구, 승강기, 계단을 이용하지 않도록 요청
- ③ 재택근무제 시행 권고
  - 재택근무 1/3 이상 권고

## 6. 마스크 착용 의무화

- ① 회관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현관, 승강기내, 화장실내, 복도, 계단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②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과총 사무처 회의실, 입주기관 자체 회의실, 국제회의장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③ 사무실내 근무시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 시설관리

### ① 전자출입명부 사용(2개소, 현관 및 차량 출입구)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예외없이 출입시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식) 사용
-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생성이 어려운 고령자 및 비 사용자의 경우 수기출입명부 작성(QR코드 인식장소에 별도 비치)
- 차량 이용자는 차량인식으로 대체(단, 차량 동승자는 QR코드 인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사용은 정부의 사용 해지시까지 지속

### ② 출입자 온도체크(37.5 C 이상 출입금지)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의 발열 체크
- 현관 출입자는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1차 검사, 발열 의심자는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2차 검사후 출입
- 차량 이용자는 주차장 출입시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여 검사후 출입

### ③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회관 출입자(과총 및 입주기관 임직원, 방문자, 회의실 이용자 등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후 출입
-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금지

## 2. 방역소독

### ① 매일 소독

- 출입구 손잡이, 승강기, 회의실 탁자, 의자 등 자주 접촉하는 시설, 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실시

### ② 소독제 비치

- 손 소독제 주요 장소 비치(현관, 주차장, 승강기 앞, 회의실 앞 등)
-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 및 화장실 안내 표시

### ② 정기 소독

- 1개월에 2회 이상 회관 전체 소독 실시

※ 회관내 확진자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특별방역소독 실시

### 3. 회의실 사용 제한

#### ① 회의실 임대 사용시 필수 수칙 준수

- 회의실 출입전 출입자 체온 검사(비접촉식 체온계 구비 필요)
- 회의실 출입전 충분한 손소독제 구비 및 사용(손소독제 구비 필요)
- 회의실 출입전 마스크 반드시 착용(미착용자 입실 금지)
- 회의실내 거리두기 이행(16m<sup>2</sup> 당 1인 제한)
- 참석자 명단 작성 및 보관(1개월 이상)

#### ② 충분한 거리 유지

- 참석자간 가급적 2m 이상 거리두기
- 회의실 내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등) 자제하기
- 회의실 이용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두고 여유있게 진행

#### ③ 국제회의장 사용 중지(임대 중단)

- 온라인 방송지원실 이외 모든 회의실 이용 금지

#### ④ 방문자 대기석 철수

- 현관 및 지하1층 로비 방문자 대기석(소파 및 책상) 철수

### 4. 사무처 근무

#### ① 시차출퇴근제 강제

- 시차출퇴근제(팀원, 팀장 대상) 실시 강화(부서별 적정인원 배분)

#### ② 시차점심시간제 강제

- 시차점심시간제(팀원, 팀장 대상) 실시 강화(부서별 적정인원 배분)

#### ③ 문화의날 행사 시행 중지

- 매월 시행되는 문화의 날 행사 중단

#### ④ 전체 회식 등 모임 중지

- 사무처 직원 전체 모임 중지
- 소모임 중지

#### ⑤ 재택근무제 강화

- 재택근무제 강화(출근자 1/3 이상 유지)

#### ⑥ 외부회의 참석 금지

- 국내외 출장 및 외부 회의 참석 금지

### 5. 입주기관 권고

① 시차출퇴근제 권고

- 시차출퇴근제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

② 시차점심시간제 권고

- 시차점심시간제를 사용하여 많은 수의 직원이 동일시간에 출입구, 승강기, 계단을 이용하지 않도록 요청

③ 재택근무제 강화 권고

- 재택근무 2/3 이상 권고

6.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① 회관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현관, 승강기내, 화장실내, 복도, 계단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②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과총 사무처 회의실, 입주기관 자체 회의실, 국제회의장 회의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③ 사무실내 근무시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Ⅲ. 확진자 발생시 방역 및 통제 지침

---

#### ① 긴급 방역체제 가동

##### 1. 회관 전체 또는 해당 층 즉시 폐쇄

- ① 출근자 전원 귀가 조치
- ② 확진자 발생 사무실, 해당 층, 현관, 승강기, 계단, 복도, 화장실 등에 대해 즉시 긴급 방역소독 시행

##### 2. 보건소와 연락망 확보

- ① 보건소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협조, 접촉가능자 명단 확보 및 제출
- ② 검사 대상자 분류 확정시 대상자에게 CV검사 요청 문자 발송

##### 3. 대내외 상황 보고

- ① 방역총괄담당자 : 회장 및 사무총장에게 긴급상황 보고
- ② 방역관리팀 : 과기정통부 기관담당자에게 긴급상황 보고  
전체 입주기관에 긴급상황 공지(비상연락망 가동)
- ③ 방역협조팀 : 사무처 직원 재택근무제 권고 조치(필요시)

#### ② 확산 방지 조치

##### 1. 회관 전체 또는 해당 층 출입통제

- 보건소 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출입통제  
※ 통제기간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최대한 안전가능시까지 통제 유지

##### 2.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 통제

- ① 확진자는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이송 확인 및 연락 유지
- ② 밀접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 유지
- ③ 간접접촉자 등은 CV검사 실시 결과 확인

##### 3. 대내외 상황 보고

- ① 방역총괄담당자 : 회장 및 사무총장에게 주요진행사항 보고

- ② 방역관리팀 : 과기정통부 기관담당자에게 주요진행사항 보고  
전체 입주기관에 주요진행사항 공지
- ③ 방역협조팀 : 사무처 직원 재택근무제 권고 유지(필요시)

### ③ 긴급상황 해제

#### 1. 회관 전체 또는 해당 층 출입통제 해제

- 보건소 지침에 따라 출입통제 해제

#### 2.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 통제 해제

- ① 확진자는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퇴소후 1주일간 재택근무 유지
- ② 밀접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후 보건소 격리해제 확인후 회관 출입 가능
- ③ 간접접촉자 등은 CV검사 “음성” 확인후 회관 출입 가능

#### 3. 대내외 상황 보고

- ① 방역총괄담당자 : 회장 및 사무총장에게 긴급상황 종료 보고
- ② 방역관리팀 : 과기정통부 기관담당자에게 긴급상황 종료 보고  
전체 입주기관에 긴급상황 종료 안내
- ③ 방역협조팀 : 사무처 직원 정상출근 안내

##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주요 사항

###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li> <li>▲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li> <li>▲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li> </ul>
일반관리시설 (1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li> <li>▲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등</li> <li>▲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디카페</li> </ul>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li> <li>▲ 4㎡당 1명 인원 제한</li> </ul>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음식 제공 금지</li> <li>▲ 4㎡당 1명 인원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 이후 운영 중단</li> <li>▲ 4㎡당 1명 인원 제한</li> <li>▲ 노래음식 제공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당 1명 인원 제한</li> <li>▲ 21시 이후 운영 중단</li> <li>▲ 노래음식 제공 금지</li> </ul>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음식 섭취 금지</li> <li>▲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 이후 운영 중단</li> <li>▲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li> <li>▲ 음식 섭취 금지</li> <li>▲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li> </ul>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li> <li>▲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시 이후 운영 중단</li> <li>▲ 좌석 배치하여 운영 (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li> </ul>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하 칸막이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하 칸막이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li> <li>▲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li> <li>▲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하 칸막이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당 1명 인원 제한</li> <li>▲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li> <li>▲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li> </ul>	
<b>(취폐의 경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li> <li>▲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4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16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 금지 ▲ 시설 면적 16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집합금지
오락실·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실내 체육시설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사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선택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 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 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 룸은 50%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집합금지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 단계 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b>의무화</b> (위반 시 과태료)	▶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를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b>권고</b>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b>예외</b>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단계 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b>고위험 사업장</b>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b>이외 기관·기업</b>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전 인원의 1/5)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예 전 인원의 1/3)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